

1.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中 改正法律

法律 第5,285號 1997. 1. 13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의 분양가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용 공업단지조성사업 및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함.

주요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동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

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5조의 2 제1항 중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경감대상사업을”을 “제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으로, “경감”을 “감면”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로, “분할납부를”을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를”으로 하고,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조 제3호, 제14조 제1항·제2항, 제15

조 제1항, 제16조의 2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제2항, 제23조 제1항·제2항,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제5항, 제20조 및 제21조 제2항 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